

「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체육인 인권 보호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4조~제5조)
- 체육인 인권 교육 및 신고·상담 시설의 설치(안 제6조)
- 비밀누설 금지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2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체육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의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집행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인권침해 방지 교육 및 조사를 통해 우리시 체육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임.